

눈 앞에 다가온 최저임금 개악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임금 1만원 쟁취는 한발도 내딛지 못했는데 ‘최저임금이 올라도 월급은 올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현행 최저임금법6조에 의하면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한 임금 외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연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복지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식대·교통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최저임금은 [기본급+직무수당, 직책수당 등]으로만 산정합니다.**

그런데 2018년에 최저임금이 고작 7,53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불구하고 세상이 난리난 것처럼 자본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던 ‘연단위 상여금, 기타 복리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꼼수가 판치고 있습니다.** 기업주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취업규칙을 고쳤고, 이제 국회가 바톤을 이어받아 4월 내에 최저임금산입범위를 개악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국회에서 개악되면 이렇게 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인상 전	지금 법 그대로 두면?	국회가 삭감법 통과하면?
2017년 2월 급여명세서	2018년 2월 급여명세서	2018년 2월 급여명세서
기본급 1,352,230원	기본급 1,573,770원	기본급 1,352,230원
명절상여금50% 676,115원	명절상여금50% 786,885원	명절상여금50% 676,115원
식대 100,000원	식대 100,000원	식대 100,000원
교통비 50,000원	교통비 50,000원	교통비 50,000원
총액 2,178,345원	총액 2,510,655원	총액 2,178,345원

이걸 다
최저임금에!

본말이 전도되었습니다. 국회가 할 일은 최저임금 개악이 아니라 재벌개혁법을 만들어 납품단가 후려치기,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개악저지! 비정규직 철폐! 4·21 대행진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을 삭감하려 합니다

국회발 국민임금 삭감, 지금 막아야 합니다.

2018. 4.21(토) 오후2시~ / 대학로 → 종로 → 광화문



4·21 대행진 4대 요구

- 하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저지(상여금, 수당포함 저지)
- 하나, 상시·지속·생명·안전업무 정규직 사용(정규직 사용원칙)
- 하나, 진짜사장 원청회사가 노동3권 보장(단결권·단체 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
- 하나, 기간제·파견법 폐지(비정규직 양산법 폐지)

응답하라! 문재인정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우리는 쓰다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다!



불법고용 엄중처벌, 상시업무 정규직 전환

여기저기 불법파견 판정이 나는데 간접고용·사내하청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줄어들기는커녕 동희오토에 이어 현대 모비스, 현대위아 등 오히려 정규직 제로공장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공장 뿐만 아니라 기술 서비스, 유통업 등 전산업에 걸쳐 간접고용이 넘쳐 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법을 알고도 눈감은 정부와 법을 무시하는 재벌의 오만함에 기인합니다. 불법파견을 뿌리뽑고 정규직 중심의 고용구조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첫째, 불법파견의 대명사 정몽구 회장과 한국지엠의 카허카젠 사장,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을 엄중처벌해야 합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시간을 주면서 불법을 방조하고 검찰이 무혐의 조치로 불법을 조장했습니다. **둘째, 이제라도 불법파견을 바로잡으려면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조속한 판결과 시정명령이 내려지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셋째,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이 민간부문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민간부문까지 정규직 전환정책이 확대시행될 수 있도록 견인하고 요구해 나가는 마중물 투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넷째, 간접고용을 금지하는 상시업무 정규직사용 원칙을 법에 명시하는 제도개선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도 국민, 노동3권 보장



간접고용노동자에게도 헌법상의 노동3권을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은 **원청회사에게 사용자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헌법 33조의 노동3권이 박탈되고 있는 것은 '이득을 취하는 원청 사용자'가 책임을 안겨도 되기 때문입니다. 노조를 만들면 업체가 폐업되고, 교섭을 요구하면 실질적 결정권자인 원청회사가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고 하고, 단체행동권을 행사해도 원청회사의 대체인력으로 무력화되는 부당한 사회구조와 법·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노동3권	개정요지	개정내용
단결권 보장	부당노동행위 책임확대 (노조법 81조)	근로계약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책임
단체교섭권 보장	사용자 정의확대 (노조법 2조)	교섭의무를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자로 확대
단체행동권 보장	대체인력 투입금지 (노조법 43조)	쟁의행위시 사용사업주의 중단된 업무 직접 수행 또는 소속 근로자 대체 수행 금지

비정규직 양산법 폐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기간제법, 파견제법을 철폐하는 것**입니다.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있을 뿐 사용사유 제한도 없고, 2년경과 시 정규직 간주조항도 없습니다. 파견법 역시 32개 업종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점차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간접고용을 확산시킨 주범은 파견법으로 철폐되어야 합니다. **기간제, 파견제법을 철폐하고 근로기준법에 상시업무 정규직화 원칙을 명시하는 것이 비정규직 없는 세상으로 가는 길입니다.**